



‘딥페이크’ 관련 법적 책임과 실무상의 주요 쟁점

박상오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딥페이크’란 무엇인가?

2024년 10월 16일부터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에서 ‘딥페이크’라는 용어를 특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는 ‘허위 영상물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범위도 훨씬 더 넓다. 물론 성폭력처벌법의 위와 같은 개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딥페이크’ 영상에 따른 폐해였다.

딥페이크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 지능 또는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에 대한 이미지 합성 기술을 말한다. 이러한 딥페이크는 영화 등의 촬영이 끝난 상태에서 주연 배우가 물의를 일으킨 경우 화면상의 배우 교체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던 인물(사망한 배우, 가수 등)을 다시 영상 속에 구현하는 데에 사용될 수도 있고, 유머나 패러디 등에 사용되거나 버추얼 인플루언서(virtual influencer)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는 선거 등의 과정에서 가짜뉴스 제작을 위하여 활용되거나(경쟁자가 막말을 하는 영상의 제작 등) 사기 및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도 있고(가족 등의 얼굴을 이용한 영상 통화 등), 특히 연예인 등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활용한 음란물 등의 제작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과거에도 영상이나 이미지의 합성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딥페이크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이 활용되어 훨씬 정교하고 빠르게 또한 대량으로 가짜 영상, 이미지를 생성 및 편집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된다. 합성이나 조작의 대상 역시 과거에는 이미지 수준이었다면 현재는 영상의 화면적 요소뿐만 아니라 음성 등까지도 실제 특징인이 말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조작·편집이 가능하게 되었다. 딥페이크의 이러한 특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과 초고속 인터넷망의 폭넓은 보급 등에 힘을 얻으면서 현재는 단 하나의 영상만으로도 매우 크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딥페이크와 관련된 법적 규제 – 공직선거법

먼저 우리나라의 법률 중 딥페이크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 「공직선거법」뿐이다. 동법 제82조의8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공직선거법」이 2023. 12. 28. 법률 19855호로 일부 개정될 때 신설되었다. 앞서 본 딥페이크를 이용한 여러 범죄 중에서도 가짜뉴스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투표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왜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그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위 조항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중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또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선거운동 기간 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딥페이크 영상 등에 일정한 표시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4호). 표시의 내용은 그 대상이 음향인지 영상인지, 이미지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체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1의3).

위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활용되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규제하

되 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②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면서도 딥페이크 영상 등이라는 점을 표시하도록 하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딥페이크와 관련된 법적 규제 – 성폭력처벌법

우리나라는 딥페이크와 관련된 여러 범죄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0년 3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딥페이크 음란물의 반포 등을 처벌하는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를 신설하였다. 당시의 개정 이유는 위 조항의 신설에 관하여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거나 처벌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피해자, 일반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에 사용된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의 실제 주인을 말한다. 이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에 대한 처벌), ② 이러한 허위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딥페이크 음란물 반포자에 대한 처벌). ③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반포 등의 죄(위 ②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였다(=영리목적 정보통신망에 의한 반포 등의 가중처벌).

최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위와 같은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였다. 우선, 위 ①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였는데, 개정법에서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딥페이크 음란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어떠한 목적으로 제작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처벌받게 되었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기존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위 ②의 딥페이크 음란물 반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마찬가지로 기존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위 ③의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자의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던 것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되었다.

특히,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즉, 소위 '단순 이용자'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상습죄를 신설하여 위 ① 내지 ③의 죄를 상습으로 범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딥페이크와 관련된 법적 규제 - 기타 규제 등

딥페이크 영상 등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하는 권리 등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한 규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딥페이크 영상 등'이라는 '수단'에 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한 결과 특정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익 침해라는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영상 등의 악용은 수많은 경우의 수가 가능하므로 이를 모두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먼저 딥페이크 영상 등은 타인의 얼굴, 신체 등을 합성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초상권'이라는 인격권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합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가 가능하다.

또한 딥페이크 영상 등은 주로 연예인 등 유명인의 얼굴 등을 합성의 대상으로 삼는데,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삼고 있으므로(위 조항은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금지 규정의 형태로 입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 등은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청구(같은 법 제4조)나 손해배상청구(같은 법 제5조)의 대상 등이 될 수 있다. 모델의 동의 없는 딥페이크 광고 영상 제작이나 배우의 동의 없는 딥페이크 이용 콘텐츠 등이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사기 등의 전형적인 범죄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등의 범죄를 들 수 있다. 실제로 올해 10월 말 중국의 한 부모가 제주도를 여행 중인 딸이 손발이 묶인 채 울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받아 한국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영상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이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딥페이크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누구나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과 실시간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보이스피싱 등을 시도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만큼 딥페이크 영상 등에 따른 재산 피해의 확대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딥페이크 영상 등은 전세계적인 문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악용에 따른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다. 최근의 미국 대선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지지자들의 선거운동이 논란이 되었고, 영국 기반의 글로벌 기업인 '에이럽(Arup)'이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회사 고위 임원의 영상에 속아 약 2,5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딥페이크 음란물은 세계적으로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성범죄가 되어 각

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8월 대학가 등에서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등이 발각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세계 각국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딥페이크에 대한 각종 규제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 차원의 규제는 확인되지 않지만, 개별 주별로 살펴보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경우(텍사스, 캘리포니아)나 악의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뉴욕, 버지니아) 등이 확인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3년 10월 「안전한 AI 개발 및 이용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th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을 발표한 것 등을 보면, 미국에서도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 및 딥페이크 기술 이용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제정하여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시스템의 공급자(provider, 시스템 개발자)와 사용자(deployer, 시스템 사용자) 모두에게 투명성 의무(Transparency Obligation)를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발자에게는 콘텐츠가 인위적으로 생성되거나 조작되었음을 판독할 수 있는 형식으로 표시하여 이를 기계적으로 식별(또는 감지) 가능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용자에게도 영리 목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경우 등에 콘텐츠가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조작되었음을 공개(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역시 제정하였는데, 해당 법률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과 같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신고, 플랫폼의 삭제·차단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사이버행정부에서 2023년 1월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규정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심층합성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을 시행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는 누구든지 딥페이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상 제작·복제·배포 등이 금지된 정보의 제작과 법령상 금지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투명성 확보, 이용자 고충 처리 및 불법정보 처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 국가들 외에도 영국은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을 통하여 동의 없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그 유포를 협박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고, 호주는 올해부터 「개정 형법(Criminal Code Amendment)」을 통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을 온라인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을 형사처벌하고 있다.

한편, 딥페이크 영상 등에 대해서는 플랫폼 차원의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를 운영 중인 구글(Google)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도구를 개발하는 중이라고 밝혔고(2023년 12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음란하거나 과도한 노출이 포함되도록 변경하거나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의 광고를 금지한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2024년 5월). 또한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올해 3월경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가 실재라는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크리에이터(creator)가 인공지능 기술 사용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지속적인 위반 시에는 콘텐츠 삭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도 올해 4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악의적 선거 딥페이크 사용 방지를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딥페이크 영상 등의 악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딥페이크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딥페이크 영상 등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가짜(fake)'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고인(故人)이 된 배우나 가수를 등장시킨 영화, 죽은 자녀를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것처럼, 딥페이크 기술은 그 사용 방법 등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의 핵심 산업임을 부정할 수 없는 현재 시점에서 딥페이크 관련 기술의 발전이 기술과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세계 각국이 원천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금지하기 보다는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향을 취한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면, 결국 관리와 통제에 그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① 딥페이크 음란물 등 관리와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 및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② 딥페이크 영상 등의 유통이 주로 이루어지는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는 불법 정보의 차단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일정한 의무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플랫폼 사업자 등의 투명하고 자발적인 조치도 동반되어야 한다. ③ 딥페이크 영상 등의 악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확실하게 삭제나 정정 보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추가적으로 정비할 필요도 있다. ④ 인공지능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 등의 제정을 통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의 생성·편집 단계에서부터 기술적으로 감지 가능한 표시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딥페이크 기술의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 및 표시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딥페이크 기술 역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도구(tool)'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 도구를 어떻

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류는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도 있고, 인류가 새로운 위협에 지속적으로 시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위 도구가 바람직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입법뿐만 아니라 행정, 사법, 플랫폼 사업자 등의 기업 그리고 개개인의 이용자까지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딥페이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한 상황이지만, 부디 미래에는 모두의 노력으로 딥페이크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